

군포도시공사 제4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계약직직원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강 성 공



강성공

2020년 4월 22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44호

군포도시공사 계약직직원규정 일부개정 규정

군포도시공사 계약직직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일반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

제11조 (해석)

- 가. 본 계약서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“사용자”의 해석에 의한다.
- 나. 근로자는 본 계약서 및 당 공사 제반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사용자”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강사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

제10조 (해석)

- 가. 본 계약서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“사용자”의 해석에 의한다.
- 나. “근로자”는 본 계약서 및 당 공사 제반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사용자”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성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박 양 수 (390-7617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지 제1호서식] 일반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</p> <p>제1조 ~ 제10조 <생 략> 제11조 (해석) 가. <생 략> 나.“근로자”는 본 계약서 및 당 공사 제반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<u>사용자</u>”가 정하는 바에 따 라야 한다.</p>	<p>[별지 제1호서식] 일반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</p> <p>제1조 ~ 제10조 <현행과 같음> 제11조 (해석) 가. <현행과 같음> 나.“근로자”는 본 계약서 및 당 공사 제반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<u>사용자</u>”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
<p>[별지 제2호서식] 강사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</p> <p>제1조 ~ 제9조 <생 략> 제10조 (해석) 가. <생 략> 나.“근로자”는 본 계약서 및 당 공사 제반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<u>사용자</u>”가 정하는 바에 따 라야 한다.</p>	<p>[별지 제2호서식] 강사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</p> <p>제1조 ~ 제9조 <현행과 같음> 제10조 (해석) 가. <현행과 같음> 나.“근로자”는 본 계약서 및 당 공사 제반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<u>사용자</u>”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